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이현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3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20일
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(1명)
찬 성 자 : 경만선, 김 경, 김용석,
김재형, 김정태, 김희걸,
이상훈, 이세열, 임종국,
장인홍, 채유미, 최정순,
한기영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12.16., 전부개정, 시행 2022.1.13.]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검사위원의 정수는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하며, 검사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(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10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하며, “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”를 “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결산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정수는 <u>10명</u>으로 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은 <u>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	<p>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결산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정수는 <u>20명</u>으로 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은 전체 <u>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